

『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, '15.12.24개정, '16.1.1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
- 상위 기준에 맞게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구미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5조)
-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개정, 시행됨에 따라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개정 내용에 따라
안 제3조(금고지정 방법)제2항을 “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”로 수정하였고,
- 제4조제2항 “별표”의 평가 항목 중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항목 배점비중을 상향 변경하였으며, 금고선정을 위한 협력사업 출연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을 축소하였고,
- 안 제15조에서는 금고약정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하는 등 구미시와의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, 시행됨에 따라,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